

순천대학교 연구조교규정

제정 2000. 8. 23.

개정 2004. 12.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연구조교의 임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연구조교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라야 한다.

제3조(임용) 연구조교는 학기초에 학과(부)장의 요청으로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용기간) 연구조교는 학기 단위로 임용한다.

제5조(임무) 연구조교는 학과(부)장의 지도아래 주 5일 이상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수 및 연구활동 보조
2. 학생의 실험실습 교육지원
3. 기타 학과(부)장이 부여하는 학사에 관한 업무

제6조(정원) 연구조교의 정원은 매 학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연구조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 상당액으로 한다.

제8조(면직) 연구조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면직한다.

1. 대학원 학적을 상실하였을 때
2. 당해 학기내 휴학예정자일 때
3. 제5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2000. 8.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